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5. 2013고단875,2013고단1686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정우(기소), 김경년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금성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(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)을 판시 제2의 가,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, 판시 제1의 가, 제2의 다, 라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금 17,050,000원을, 피고인 2로부터 금 160,000원을 각 추징한다.

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